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 694 호 2009. 5. 8 (금)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9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99호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16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6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7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6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5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20호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9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41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4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99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999호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제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당연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무국장이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 ③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강료는” 을 “수강료 등은” 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설사용료” 를 “시설사용료 등” 으로 한다.

별표 2의 제3호 다음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함 사용료 : 월 3,000원

5. RFID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 1매 1,500원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제2호에 (10)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란과 (1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40,000원
(1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별표1 제증명수수료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제3호 “문화공보관계” 를 “문화관광체육관계” 로 한다.

별표1 <인가·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제7호 다음에 제8호 환경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단,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시기)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에 대

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 7. 1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6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7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합창단” 을 “합창단” 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분야별 예술단원 신청자는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학교)이 서구에 있는 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창단원 : 만 20세 이상 만 60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성합창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른 합창단으로 본다.

제4조(예술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예술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30%, 등록장애인은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

용료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 류

3. 캔 류(주석·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유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과태료 처분) 이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5. 비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비용기보증금을 전액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6.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비용기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법 제22조제3항)	50	100	300	
7. 비용기보증금 중 미반환보증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법 제22조의2제1항)	200	250	300	
8.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한 자(법 제25조의2)	100	200	300	
9.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고품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200	250	300	
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00	200	300	
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조한 자	200	250	300	
10.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11.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1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1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분실·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미성년자의 경우) 1부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크기 3cm ×4cm)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연 번		회원번호	
발급횟수		발급일자	
성 명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재발급 사유		비밀번호	
정보변경 확인	주 소		
	직 업	전화 번호	자 택
	E-mail		휴대폰
	직장명 (학교명)		직 장

본인은 도서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 할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보 호 자(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도서관명)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4cm) 1매 2. 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변동사항 확인용) (현 주소 미기재 신분증의 경우 주소확인을 위해 최근 주민등록등본 1부 제시) 3. 미성년자일 경우 최근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의 신분증(보호자의 동의 필요) 4. 제출하신 주민등록등본은 신분 및 현주소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5. RFID회원증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1,500원(제작 실비)이 부과됩니다.
----------	--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20호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을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별표 1 예술단체명란의 “여성합창단” 을 “합창단” 으로 한다.

별표 2 여성합창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 창 단	지 휘 자	1,500,000	월정액
	반 주 자	900,000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 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
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 처리 및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용역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심의절차)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용역부

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을 제출한 용역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용역계획을 심의하고 용역의 가부(可否)를 결정하거나 용역 계획의 일부를 조정한다.

④ 용역부서의 장은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획홍보실장은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기획홍보실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
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③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홍보실장은 용역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장

심의번호	심의일자	제출부서	제 목	심의결과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용역사업발주보고서

용역관리번호		용역부서	
용역사업명			
용역추진기간			
용역완료일			
용역비지출금액			
용역추진과정 확인점검사항			
용역성과품내역			
행정자료실 성과품보존	<input type="checkbox"/>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input type="checkbox"/>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 행정자료실 미송부 사유(미송부시)		
용역결과 활용계획			

(별지 제4호서식)

용역사업완료보고서

용역관리번호		용역부서	
용역사업명			
용역발주일		용역관련 예산 일 인	
용역계약방식			
용역계약금액			
용역수행업체			
용역수행기간			
기타사항			

(별지 제5호서식)

용역업무관리부

관 리 번 호	용역등록관리			용역추진관리					용역완료관리			비고
	용역 부서	용역사업명	용역 예정금액	발주일	계약 방식	계약 금액	용역 업체	용역 기간	완료일	지출 금액	성과품	